

검 토 보 고 서

■ 조 례 명

-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

■ 개정사유

- 지방자치법 제106조와 동법시행령 제4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된 출장소중 교통통신의 발달로 원격지 요건을 결하고 있으면서 관할구역 인구의 감소등으로 업무량이 크게 감소한 출장소를 폐지하고 동 조례의 자구 수정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.

■ 주요내용

- 제명 :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"를 "화순군면출장소조례"로 하고,
- 교통통신의 발달로 원격지 요건을 결하고 있으면서 주민 이용실적이 저조한 도암면 용강출장소와 이양면 목곡출장소를 폐지하며,
- 제4조 제2항중 "읍면장"을 "한천면장"으로 개정

■ 검토결과 (의견)

-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동을 위하여 도암 용강 출장소와 이양 목곡출장소를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함.
- 그러나, 비록 소수의 주민일지라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뜻에서 등.초본등의 재증명 발급 업무는 담당공무원이 전 화등으로 접수받아 출장시 전달하는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,
- 상위법규 관계나 개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른 조례의 개정(부칙 제3조)
 -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등 21개 조례개정
- 실과의 분장사무를 조정 배분함.

■ 검토결과(의견)

-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의거 기능이 쇠퇴했거나 유사중복 기구를 통·폐합 함으로써, 15개 실과에서 11개 실과로 4개과를 줄이고, 3개사업소를 폐지하는등 나름대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노력 하였다고 사료됨.
- 그러나, 지방행정 조직의 특성상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할 때 지방행정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의 복지와 생활 행정의 구현이라는 측면이 소홀히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.
따라서 부서의 업무량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정원책정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겠음.
- 다만, 본 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고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사료됨.

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

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화순군면출장소조례

제1조 (목적)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원격지 주민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 출장소(이하 "출장소"라 한다.)를 둔다.

제2조 (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) 출장소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.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한천면 영외출장소	한천면 반곡리	반곡리, 평리, 정우리, 동가리, 고시리

제3조 (관장사무) 출장소의 관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민원사무
2. 세정사무
3. 구호사무
4. 산업사무

제4조 (소장) ① 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일반직 6급 직원으로 보한다.

②소장은 군수 또는 한천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5조 (공무원) 소장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어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'98. 10. 1 부터 시행한다.